

휴슨 시

주거용 수도 중단 방침

1. 방침의 범위와 목적: 이 방침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만 적용된다. 고객의 무허가 행동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을 규정하는 목적이다.

2. 해당법: 2018년 9월 28일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법 998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항으로 제정되었다.

3. 명령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관하여, 시정부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의 116900-116926항에 규정된 명령을 준수하며, 수정사항을 따르고,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는 그러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을 준수할 것이다.

4. 절차:

4.1 청구 - Delinquency.

4.1.1 납부마감일. 서비스에 대한 수도요금 고지서는 고지서를 보낸 달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혹은 그 전에 납부해야 한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4.1.2 체납 판정.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수도고지서는 체납으로 간주된다. 하단 4.2항에 의거하여 육십(60)일 이상 체납인 계정에 대해 수도서비스를 차단한다. 고지서요금의 납부마감일로부터 체납을 계산한다.

4.2 납부 집행

4.2.1 임박한 중단 통지서. 고객의 계정이 납부마감일로부터 60일 동안 미납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납과 임박한 종료 통지서"를 고객과 서비스 주소, 기록상 계정주에게 발송한다. 고객의 주소가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니면, "체납과 임박한 종료 통지서"는 서비스 주소로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내게 된다. "체납과 임박한 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십(10)일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로 정해지는 임박한 서비스 종료일이 "체납과 임박한 종료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체납과 임박한 종료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 체납료
-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의 납부일이나 납부약정 체결일
- 체납료를 납부하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연체된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에 관한 절차 설명
- 소비자가 납부연기, 인하,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2) 통지서가 배달이 불가능하여 돌아온 경우 통지서를 서비스 주거지에 직접 전달하거나, 입주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고 온다.

(3) 다음 상황이 모두 충족될 경우 공급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 수도 공급 중단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소비자나 소비자의 세입자는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 소비자는 수도시스템의 정상 청구주기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충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소비자가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에 정상 청구주기에서 서비스요금을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경제적 부담 한도”)
- 소비자는 하단 4.2.3항에 의거하여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인하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422 고지서의 항의, 항소:

(1) 고지서가 발급되고 십(10)일 내에 고객은 시정부에 City of Hughson, PO Box 9, Hughson, CA 95326으로 서비스 고지서 요금에 대해 주장된 오점을 항의할 수 있다. 고지서 요금을 항소한 고객은 문서에서 주장된 오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만기 요금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지서가 발급되고 십(10)일 내에 고객이 항소하지 않으면 고객이 고지서 요금을 수락한 것으로 여기고, 고객의 항의권 혹은 항소권은 면제된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려면, 고지서 요금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부분은 납부마감일까지 납부금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지서가 발급되고 십(10)일 내에 고객이 항의하고 시정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면, 시정부가 답변하고 십(10)일 내에 고객이 시정부의 판정을 시 부장에게 항소해도 된다. 항소는 문서로 해야하며 시정부의 아래 주소로 보낸다. City of Hughson, PO Box 9, Hughson, CA 95326, Attn: City Manager. 항소문에서 고객의 항의에 대한 시정부의 답변이 부족한 이유와 고객이 바라는 구제책을 설명해야 한다. 시 부장은 고객의 항소가 타당성이 있는지 판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시 부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항소가 대기 중이면 고객에게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423 별도납부약정:

(1) 약정: 계정이 체납인 고객에게 시정부는 별도납부약정 중 한 가지를 제안한다. 시정부는 단독재량으로 어느 약정(들)을 제안하고, 어느 약정을 고객이 이행해도 되고, 제안한 약정의 약관을 정하게 된다.

- 할부상환약정: 부장이나 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객이 계정의 미납잔액을 십이(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약정일로부터 시작) 매월 동일한 상환금으로 납부할 것에 동의하는 약정.
- 별도납부일정: 고객이 계정의 미납잔액을 일정에 따라 상환금으로 납부할 것에 동의하는 일정 (일정 체결일로부터 시작)
- 납부연기약정 혹은 납부인하약정: 다음과 같은 약정이다 (i) 고객이 약정에 나온 기간에 매월 동일한 납부금으로 계정 미납잔액의 퍼센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최종 납부금을 시정부가 받으면 시정부가 계정의 미납 잔액의 일부 퍼센트(약정일로부터 시작)를 탕감해주게 된다. 혹은 (ii) 계정에 누적된 연체료, 이자, 벌금, 그러한 결합의 전체나 일부를 탕감하거나 인하해준다. 혹은 (iii) 연기나 인하 조건을 제안한다.
- 임시납부연기: 당시 미납인 계정에 대한 완납을 연기하고, 약정에 나온 날짜까지 혹은 날짜 전에 (약정 체결일로부터 시작) 고객이 미납 계정의 잔고를 납부할 것에 동의하는 약정.

(2) 전화번호. 고객은 시정부에 (209) 883-4054으로 전화하여 별도납부약정을 문의한다.

424 별도납부약정 도중에 서비스 중단. 고객이 상기4.2.3항에 나온 시정부의 별도납부약정 중 한가지를 체결하고, 동의한 약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객이

(별도납부약정을 이행하는 중) 육십(60)일 이상 현재 주거용 서비스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중단일로부터 오(5)일 전에 최후 "서비스 중단 의도 통지서"를 건물에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게 되고, 동의한 약정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요금과, 동의한 약정의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계정의 수수료, 요금, 벌금을 납부하여 계정을 현상유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4.25 집주인-세입자 관계: 집주인이 계정을 현상유지하지 않아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서비스 중단하기 최소한 십(10)일 전에 임박한 중단 통지서로 통보할 것이다. 세입자는 체납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 수도 서비스를 직접 청구받는 옵션이 있게 된다.

4.26 서비스 중단 -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면, 주거지의 수도계량기를 잠근 위치에 두게 된다. 따라서, 시정부의 당시 현재 매스터 수수료 일정에 나온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육십(60)일 동안 체납된 이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 선취권이 설정될 수 있고 카운티 등기소에 작성하게 되며, 계량기를 제거할 수 있다. 고객이나 건물주는 계량기가 꺼지는 시점에서부터 그 후에도 매월 서비스 최저 요금과, 서비스 연결로 누적되는 추가요금, 벌금, 이자에 제한없이 책임이 있다. 계량기를 제거하고 나면, 고객이나 건물주는 계량기가 꺼지는 때부터 이후 매월 서비스 최저 요금과 서비스 연결로 누적되는 추가요금, 벌금, 이자에 책임이 있다.

4.27 이자와 벌금. 이자와 벌금을 더한 만기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월 1.5% 이율, 혹은 당시 법으로 허용된 최고 요율에 따라(더 적은 액수로 정함) 체납일로부터 체납 계정의 이자는 누적된다.

4.28 서비스 복구. 수도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계량기가 제거된 둘 중 한 가지 상황이나 두가지 상황에서, 시정부는 주거용 서비스를 복구하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납인 수도요금, 계량기 설치비, 고객의 개통비, 시정부의 비용이나 시정부에게 입힌 손해배상 등을(제한없이) 포함한 해당요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수도서비스는 다시 시작되지 않고 수도계량기도 다시 설치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경제적 부담 한계점에 부합하는 고객에 대해 (i) 정상 영업시간의 서비스 재연결비는 \$50을 초과하면 안되며, 영업시간 이후의 서비스 재연결 비용은 \$150이고, 두가지 비용은 캘리포니아 법에서 규정한 조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ii) 십이(12)개월에 한 번씩 체납료의 이자는 면제될 것이다.

4.3 보고. 시정부는 요금의 납부 불능으로 인하여 주거용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는 연간 횟수를 인터넷 웹사이트와 기타 법에 의거하여 보고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수도자원 통제국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제한없이 포함)

4.4 통지서. 고객에게 제시한 통지서는 전부 영어와 캘리포니아 민사법 1632항에 나온 언어로 볼 수 있어야 한다.